

##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

(앞쪽)

-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: 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
- 정보제공 금융기관명: 뒤쪽 참조
- 정보제공 목적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
- 동의서 유효기간: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

### 5.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

### 6. 동의자 인적사항

관계	동의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제공 정보 (해당 항목에 “√” 표시)		정보 제공에 동의함 (서명 또는 인)
			금융거래	부동산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할 때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,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### 유의사항

-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정보제공범위
  - 정기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(산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)
  - 부동산 보유·등기 및 과세정보(지적, 건축,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)
  -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: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중

정보제공 금융기관명

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
 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
 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그 밖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
-

##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

### 1.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

성명	소속	직위	직급

### 2.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

관계	성명	철회사유	제공동의 철회 정보 (해당 항목에 “√” 표시)		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(서명 또는 인)
			금융거래	부동산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			[ ]	[ ]	

「공직자윤리법」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.

등록의무자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### 작성방법

-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,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'관계'란에는 등록의무자와의 관계(부, 모, 배우자, 자녀 등)와 철회 사유(고지거부, 등록제외, 그 밖의 사유)를 적으십시오.